

# 정 관



2019年



PAUL CHURCH  
바울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바울교회



# 바울교회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바울교회(이하“본 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교회의 사무소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기전길 1가 6-31(서완산동)에 둔다.

### 제3조(설립 목적)

1.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되 특히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리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신앙의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2. 본 교회는 예배, 교육, 성도의 교제, 봉사와 전도,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사명과 교회의 문화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
3.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나 비성경적인 행동양식, 이단 및 사이비 집단을 단호히 거부하며, 회개한 행위에는 관대함으로 용서한다.

**제4조(제정 목적)** 이 정관은 교회의 설립 목적을 유지하며 거룩함과 합리적 운영과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며 은혜로운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5조(사업)** 본 교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 |                |                     |
|----------------|---------------------|
| 1. 국내외 선교사업    | 2. 교육사업             |
| 3. 봉사 및 구호사업   | 4. 사회사업             |
| 5. 사회복지사업      | 6. 아동복지사업           |
| 7. 영유아 보육시설 사업 | 8. 기타 교회의 기여 하는 일 등 |

## 제2장 교리 및 규범

**제6조(교리)** 본 교회의 교리는 교단헌법 제13조(교리와 신조), 제14조(성삼위하나님), 제15조(원죄), 제16조(자유의지), 제17조(칭의), 제18조(성결), 제19조(칭의 후의 범죄), 제20조(재림), 제21조(인류의 구원), 제22조(신약과 제사권), 제23조(성례전)에 준하다.

**제7조(예배규범)** 본 교회의 예배규범은 교단헌법 제24조(예배와 성례전), 제25조(교회력과 교회예식)에 준하다.

**제8조(생활규범)** 본 교회의 생활규범은 교단헌법 제26조(하나님께 대한 경건생활), 제27조(건덕생활), 제28조(교회생활에 있어서 교인의 자세), 제29조(혼인규범), 제30조(규범의 준수)에 준하다.

## 제3장 교회의 조직과 직무

**제9조(대표권)** 본 교회의 대표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10조(교회구성원 및 조직)** 본 교회의 구성원은 교인, 교직자(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역자(전도사, 목사)로 구성하고, 조직은 사무총회, 당회, 직원회를 둔다

**제11조(회원자격)** 회원은 본 교인의 세례교인으로서 예문에 따라 서약하고 입회한 19세 이상인자로 구성한다. 단, 본 교회 교인의 입회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 제12조(회원의 의무)

1. 주일성수(공적예배 출석)
2. 기도 생활
3. 십일조 생활
4. 전도 생활
5. 봉사 생활

**제13조(교인)** 본 교회의 교인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본 교회에 등록된 모든 자로 신입교인,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 나누며 자격은 아래와 같다.

#### 1. 신입교인

최악에서 구원을 얻고자하여 등록하고 주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서 신입교인명부에 기입된 자

#### 2. 세례교인

교회에 출석하고 거듭난 증거가 확실한 자로 예문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자와 유소년 세례교인 및 유아세례를 받은 15세 이상 된 자로서 문답을 받고 세례교인 명부에 기입된 자.

#### 3. 유아세례교인

2세 이하 유아로서 예문에 의하여 유아세례를 받은 자.

#### 4. 유소년세례교인

15세 미만의 유소년으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거듭난 증거가 확실한 자로 예문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자.

## **제14조(정회원)**

1. 세례교인으로서 예문의 의하여 서약하고 **입회한 19세 이상 된 자.**
2. 타 지교회 및 복음주의 교파에서 이명 증서를 가지고 온자로 당회 결의에 의하여 입회한 자.
3. 세례를 받고 교적이 없는 자로서 6개월간 무흠하여 당회결의로 입회가 허락된 자.
4. 이명증서 없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경과된 자로 당회결의에 의하여 입회한 자.  
단, 미조직교회는 담임교역자의 허락으로 입회한 자.

**제15조(교인의 이명)** 교인 중 사정에 의하여 타교회로 이명코자 하는 자에게는 담임교역자가 이명 증서를 발급할 것이며 미조직교회는 치리목사가 그 증서를 발급하고, 본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교파로 가는 자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요구하는 자나 교회송사 진행 중에 있는자에게는 이명 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제16조(교인의 제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이명증서 없이 이거한 자로 1년 간 주소가 불명한 자는 가제적(加除的)을 하고 다시 1년을 기다려 소식이 없는 자.
2. 이유 없이 1년 간 공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자를 자주 권면하되 듣지 아니하는 자.
3. 범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자.

## **제17조(집사)**

### **1. 자격**

- 가. 신앙이 독실하고 덕망이 있으며, 상식이 충분하고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
- 나.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알아 순종하고 그 직업이 정당하며,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의 의무를 이행하며 세례를 받은 자로 연령이 **22세 이상 기혼자 및 30세 이상 미혼자**

### **2.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당회 및 치리목사의 지도하에 교회 제반 사무를 분장하며 예배석을 정리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며 환란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전도에 힘써야 한다.

### **3. 선택 및 임기**

집사는 당회 및 치리목사가 선택하되 임기는 1년이다.

단, 당회의 결의나 치리목사의 결정으로 정기 사무총회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제18조(안수집사)** 안수집사의 자격과 선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격**

- 가. **연령이 40세 이상** 된 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그 가정이 교회 생활에 성실하며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 나. 본 교회에서 집사로서 5년 이상 근속시무한 자로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 헌금을 드리는 자. 단, 타 지교회에서 동등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본 교회에서 집사 시무 1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복음주의 타 교파에서 동등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본 교회에서 집사 시무 2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2. 선택절차**

안수집사는 당회가 선택한다.

**3. 안수**

안수집사는 차기 사무총회 시까지 안수식을 거행하여야 하며 안수위원은 해당구역의 감찰장, 담임목사 해 지교회 장로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타 지교회와 복음주의 타 교파에서 이적해 온 안수집사는 2년 이상 경과 후 당회 또는 직원회 결의로 시무케 한다.

**4. 직무**

- 가. 당회 또는 담임교역자의 지도하에 교회 제반 사무를 분장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며 전도하고, 환란 중에 있는 자를 돌보아야 한다.
- 나. 안수집사는 경건생활이 지속되는 한 칭호는 종신토록 유지된다.

**5. 정년**

70세 이상 된 자는 명예안수집사로 호칭한다.

**제19조(권사)**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권사를 세워(롬12:8)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생활을 돌아 보며 심방권위(尋訪勸慰)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한다.

**1. 자격**

- 가. 지교회 집사로서 7년 이상 근속한 **연령 45세 이상** 된 자로하며 타 지교회와 타 복음주의 교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본 교회에서 집사근속 시무 2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타 지교회와 복음주의 타 교파에서 전입한 권사는 1년이상 경과 후 당회 또는 직원회의 결의로 시무케 한다.

나.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가정이 교회생활에 성실하여 덕망이 있는 자로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순종하며,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다. 7년 이상 목회자를 내조한 사모로 45세 이상 된 자를 당회의 결의나 치리목사 결정으로 선택절차를 거쳐 취임케 할 수 있다.

## 2. 직무

가. 당회 또는 치리목사의 지도하에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우환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권위하며 전도에 힘쓴다.

나. 권사는 경건생활이 지속되는 한 칭호는 종신토록 유지된다.

## 3. 선택절차

권사는 당회 및 치리목사가 선택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차기 사무총회 시까지 취임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단, 당회 또는 치리목사의 결정에 따라 정기 사무총회에 재석회원 과반수이상 득표로 선택할 수도 있다.

## 4. 정년

70세 이상 된 자는 명예권사로 호칭 한다.

**제20조(장로)** 장로의 자격과 권한과 직무 및 선택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자격

가. 연령이 35세 이상 되는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그 가정이 교회생활에 성실하며 덕망이 있는 자.

나.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다. 본 교회의 집사 근속 시무10년, 안수집사는 근속3년 이상 된 자로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 의무를 이행하는 자. 단, 타 지교회에서 동등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본 교회 집사 시무3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타 복음주의 교파에서 동등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본 교회집사 시무4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라. 성품이 원만한 인격자.

마. 성경지식과 임직에 상당한 사명이 있으며 대중을 통솔할만한 능력과 학식이 있는 자.

바. 파산 받을 만한 부채가 없는 자.

사. 소송 또는 징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아.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이단사이비교파에 관계되지 않은 자.

자.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2. 권한과 직무

- 가.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치리하는 치리회원이다.
- 나. 장로는 각급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회무를 처리한다.
- 다. 인의 영적상태를 돌보아 심방하며, 도리 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로 권면한다.
- 라. 장로는 사회에 대하여도 성직이니 미신자에게 전도하며 우환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 권면한다.
- 마. 장로는 예배인도와 설교가 주 임무는 아니나 담임교역자의 위임에 의하여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 3. 선택절차

- 가. 세례교인 25인에 대하여 장로 1인을 선택하되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무기명 투표제 찬성으로 추천한 자를 사무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나. 투표로 선택된 자는 지방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회에 청원하여 시취 후 합격되면 소정절차에 의하여 장립식을 거행하고 시무케 한다.
- 다. 타 지교회에서 전적하여 온 장로를 시무하게 하고자 할 때는 본 교회에서 3년 동안 교회봉사 활동이 경과한 후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무기명투표제로 찬성과 정기 사무총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 득표를 얻은 후 지방회의 허락을 받아 취임식을 거행하고 시무하게 한다.  
단, 복음주의 타 교파 장로이면 전입하여 온 장로를 시무하게 하고자 할 때는 본 교회에서 3년 동안 교회봉사 활동이 경과한 후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무기명투표제로 찬성과 정기 사무총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 득표를 얻은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케 한 후 지방회에서 시취(試取)에 합격하면 취임식을 거행하고 시무케 한다.  
단, 안수 받지 않은 타 교파 장로가 취임할 경우엔 안수례를 행하여야 한다.
- 라. 자격조건은 제20조(장로)제1항에 준한다.
- 마. 투표는 단번에 시행할 것이며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투표하지 못한다.

## 4. 장로안수 및 시무절차

- 가. 피선된 장로 후보자는 본 교회에서 장립식을 거행할 것이요 차기 지방회시까지 장립치 않으면 자연 무효가 된다.  
단, 1회에 한하여 이유서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나. 안수위원은 지방회에서 파송한 목사 3인과 장로 2인으로 하되,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다.



- 5. 장로는 종신직이니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는 한 그 칭호는 존속된다.
- 6. 장로의 시무 정년은 70세로 하며 정년이 된 자는 본 교회의 모든 공직에서 자동 사임된다.  
단, 자원 정년은 65세 이후로 한다.

**7. 장로의 서열**

- 가. 장로의 서열은 안수일자에 의하여 정하며, 같은 날짜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며 호칭은 선임장로라 칭한다.  
단, 타 지교회에서 전입된 자는 본 교회의 시무 순으로 한다.
- 나. 장로의 서열은 시무, 원로, 명예, 협동, 은퇴 장로 순으로 한다.

**8. 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18년 이상 무흠 근속 시무한 자로서 당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하며 직원회, 당회와 지방회에 발언권이 있으며 지교회에서 시무 중 교회를 개척하여 이적되었을 때에는 시무 근속으로 인정한다.  
단, 추대절차는『바울교회 관리운영규칙』으로 정 한다.

**9. 명예장로**

- 본 교회에서 정년으로 은퇴한 자와 시무장로로 5년 이상 시무하다가 65세 이후 자원 정년 한 자로서 당회의 결의로 명예장로로 추대하며 직원회의 회원이 된다.  
단, 추대절차는『바울교회 관리운영규칙』으로 정 한다.

**10. 협동장로**

- 타 지교회와 복음주의 타 교파에서 이명해 온 자는 제20조(장로)제3항(선택절차)다호(본 교회에서 3년 동안 교회봉사 활동이 경과한 후)를 충족한자 로 당회 또는 직원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칭하며 직원회 회원이 된다.  
단, 정년이 되었을 시 명예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11. 은퇴장로**

- 본 교회에서 정년(시무장로 5년 이하)이전에 은퇴한 자와 타 지교회에서 전적(轉籍)하여 시무 없이 은퇴한 자(정년 이후 전적한 경우 포함)를 은퇴 장로로 호칭한다.

**12. 장로의 휴무, 사임, 면직, 복직**

가. 휴무

시무중인 장로가 요양이나 신병, 해외여행, 기타 사정으로 시무처를 1년 이상 떠나게 될 때에는 당회결의로 정한 기간을 휴무할 수 있다.

나. 시무사임

장로가 장로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한 때와 건강 기타 사정으로 시무키 어려울 때는 당회가 권고 시무를 사임케 할 수 있다.

다. 면직

재판위원회에서 면직판결 선고를 받은 자는 면직된다.

라. 복직

시무 사임한 장로가 복직하고자 할 때는 당회 또는 직원회의 결의로 정기 사무총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1조(전도사)

전도사의 정의와 자격, 칭호, 직무,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정의

전도사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니 이를 성경에 이른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다.

### 2. 자격

가. 서울신학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신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고 학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지방회의 승인을 받은 자.

나. 교육전도사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의 전 과정과 교단 소정의 교역자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지교회에서 청빙 받은 자로서 지방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다. 음악전도사는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의 전 과정과 교단 소정의 교역자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지교회에서 청빙 받은 자로서 지방회의 승인을 받은 자.

라.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신학전공 교역자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지방회의 승인을 받은 자.

마. 본 교회 지방교역자 양성원(지방 신학교)을 수료한 자로서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지방회의 승인을 받은 자.

바. 본 교회가 인정하는 타 교파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전공 정규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지방회의 승인을 받은 자.

단 복음주의 타 교파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수료자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단 헌법, 성결교회역사, 성결교회 신학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 건강하고 부채가 없으며,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

### 3. 칭호와 직무

가. 담임전도사

담임전도사는 당회장 및 치리목사의 위임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1)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인을 심방하며 전도한다.

2) 결혼식, 장례식 및 추모식을 집행한다.

3) 직원회를 소집하고 당회가 필요할 때에 발언한다.

나. 전담전도사

전담전도사는 담임목사 또는 치리목사의 위임에 따라 성경을 가르치고 심방하며 담임목사를 보좌한다. 단, 전도사들의 서열 및 직책은 당회 및 치리목사가 정한다.

다. 교육전도사

교육전도사는 당회의 위임에 따라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교육에 대한 일을 담당한다. 단, 교육전도사는 담임전도사로 청빙될 수 없다.

라. 음악전도사

음악전도사는 당회의 위임에 따라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교회음악에 대한 일을 담당한다. 단, 음악전도사는 담임전도사로 청빙될 수 없다.

마. 명예전도사

본 교회에서 25년 이상 근속한 자로 지교회 당회의 결의로 명예전도사로 추대할 수 있다.

4. 임기

1년이며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5. 정년

남·여 전도사의 시무 정년은 60세로 한다.

6. 청빙절차

전도사의 청빙절차는『바울교회 관리운영규칙』으로 정 한다.

**제22조(목사)**

목사의 정의, 자격, 직무,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정의

목사는 안수례를 베풀어 세운 성직이니 사도시대 교회의 감독이요, 목사, 장로(행 20:17-18)라 함과 같으니 교회 내에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복음의 사신이며(고후 5:20, 엡 6:20), 교회의 사자이며(계 2:1), 신앙과 진리의 교사이며(딤후 2:7, 딤후 1:11), 신약의 집사요(고후 3:6), 복음의 전파자요(딤후 4:5), 복음의 제사장이다(롬 15:16).

2. 자격

가.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및 선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역자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 교회에서 전담전도사이면 4년, 단독목회이면 2년간의 목회경력이 있으며 연령이 28세 이상 된 자로 한다.

- 1) 십자군 전도대 2년과 전담전도사 시무 1년 이상 된 자와 특수전도기관 4년 이상 된 자.
- 2) 본 교회에서 장로직으로 5년 이상 시무하고 서울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대학원, 목회대학원 및 선교대학원, 목회신학연구원 졸업 후 단독목회경력 1년 이상 된 자.
- 3) 총회에서 인정하는 특수기관에서 시무한 자.
- 4) 목회신학연구원을 수료한 자.

나. 교육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과정과 교단소정의 교역자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음악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과정과 교단소정의 교역자과정을 이수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 구령(救靈)에 열심이 있는 자.

마.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치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

바. 신앙이 순수하며 이단을 분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

사.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함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자(딤후 4:12).

아. 재물에 대하여 청렴하며, 교회나 사회에 비판을 받는 일이 없는 자.

자. 가정이 화합하고 자녀를 성경적으로 지도하며,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

차.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

카.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이단사이비교파에 관련되지 않은 자.

타. 목사안수 청원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3. 직무

가. 목사는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교인의 행정과 권징을 처리한다.

나. 교인을 심방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고 과부, 고아, 고독한 사람과 빈궁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

다. 지교회의 직원회, 당회, 사무총회의 의장이 된다.

라. 본 교회의 감찰회, 지방회, 총회의 의장은 담임목사에 한하며 경우에 따라 사회를 위임할 수 있다.

### 4. 칭호

목사는 종신직이니 경건생활을 계속하는 한 목사의 칭호는 존속한다.

가. 위임목사

본 교회에서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이니 본 교회에서 정년까지 계속 시무할 것이며, 목사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담임목사

청빙절차에 의하여 청빙 받은 후 본 교회 목회를 전담하는 목사이다.

다. 부목사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라. 선교목사

총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선교단체에서 본 교회에 파송 받은 선교사나 본 교회가 국내외 선교를 위하여 파송한 목사이다.

마. 교육목사

담임목사를 교회교육으로 보좌하는 목사이다.

바. 음악목사

음악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교역자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음악전도사로 시무한 경력이 있으며 연령이 28세 이상 된 자. 단 음악목사는 담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으며 담임목사로 청빙 받으려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사. 협동목사

총회가 인정하는 각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각 지교회에 소속하여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에 협력하는 목사이다.

아. 원로목사

안수 받은 후 본 교단에서 25년 이상 근속 시무 중 본 교회에서 10년 이상 무흠하게 근속 시무하여 본 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자로서 당회와 지방회에 발언권이 있다. 단, 추대 받은 원로목사에 대하여는 본 교회가 현직 담임목사 본봉의 80% 이상을 지급한다. 단, 추대 절차는 『바울교회운영규칙』으로 정 한다.

자. 명예목사

은퇴한 목사로 본 교회에서 추대식을 거행하고, 직원회에 발언권이 있다.  
단, 추대 절차는 『바울교회운영규칙』으로 정 한다.

차. 은퇴목사

본 교회나 기관에서 은퇴한 모든 목사.

## 5. 안식년

본 교회는 담임목사의 시무 7년차에 안식년을 실시할 수 있다.

## 6. 부목사 임기

부목사(교육, 음악 등)는 담임목사의 제청으로 당회가 결의하여, 지방회의 승인을 받아 청빙하고 그 임기는 1년이며, 담임목사의 제청과 당회의 결의로 연장할 수 있다.

## 7. 시무정년

시무정년은 70세로 하며 정년 된 자는 본 교회의 모든 공직에서 자동 사임된다. 단, 자원 은퇴는 65세 이후로 하고 지교회의 예우는 70세까지 한다.

## 제23조(목사의 청빙)

담임목사의 청빙은 다음과 같다.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목사가 가정생활에 아무런 염려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목사는 그 직분의 신성함을 자각한 후(히13:17) 교회에 부임하여야 한다.

### 1. 목사의 청빙

- 가.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청빙서를 감찰회를 경유하여 지방회에 제출하면 지방회는 심리부와 인사부 소위원회를 거쳐 해 지방회장에게 송부한다.
- 나. 청빙서를 받은 목사가 부임할 때에는 사임서를 본 교회를 거쳐 지방회에 제출할 것이요. 수리되면 지방회는 이명증서와 교역자 인사기록카드를 부임할 지방회에 송부한다.
- 다. 청빙 받은 목사가 부임하고 이명증서와 교역자 인사기록카드가 접수되면 인사부 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회장이 치리권을 부여한다.

### 2.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자

- 가. 현임(現任) 또는 전임(前任) 담임목사의 4촌 이내의 친족 및 배우자와 자녀(사위)
- 나. 본 교회 당회원(시무, 원로, 명예장로 포함)의 4촌 이내의 친족 및 배우자와 자녀(사위)
- 다. 본 교회 현임(現任) 부목사

### 3. 청빙위원회 구성

- 가. 본 위원회는 담임목사의 청빙(이취임)이 예상되는 시점 1년 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중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는 구성을 미룰 수 없다.
- 나.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신(新).구(舊) 위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당회에서 무기명투표제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로 한다.

- 라. 각 분과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마. 각 분과 위원회 위원 중 자체적으로 1명씩을 위원으로 선출한다.  
단, 선출위원은 시무장로 10년 미만자로 청지기적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한다.
  - 바. 원로장로(1명), 명예장로(1명)는 원로·명예장로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를 위원으로 한다.
  - 아. 본 교회 사무장(시무장로)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는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4. 청빙위원회 회의는 재적(在籍)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청빙위원회의 투표방식은 무기명투표제로 한다.
  6. 기타 세부적인 청빙절차는『**바울교회 관리운영규칙**』으로 정 한다.

### **제24조(위임목사의 추대)**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추대 시 당회 제적 3분의 2이상이 무기명투표제로 찬성을 가결(可決)한 후, 사무총회에서 재석회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추대절차는『**바울교회 관리운영규칙**』으로 정 한다.

### **제25조(목사의 사임, 휴직, 사직, 권고사임, 면직, 복직)**

목사의 사임, 휴직, 사직, 권고사임, 면직, 복직은 다음과 같다.

#### **1. 사임**

목사가 자유 사임코자 할 때에는 사임서를 당회를 경유하여 지방회에 제출하고 지방회는 이를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2. 휴직**

목사가 건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무를 6개월 이상 휴직하게 될 경우 당회와 협의하여 지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사직**

사직은 목사직의 퇴직을 의미하며 사직 후에는 평 교인이 된다.

목사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당회를 경유하여 지방회에 제출하면 지방회에서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 **4. 권고사임**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당회결의로 지방회가 권고사임하게 하고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이를 처리한다.

## 5. 면직

목사의 면직은 징계법에 의하여 처리 공고한다.

## 6. 복직

사임, 휴직, 사직, 면직된 자로서 목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원을 지방회에 제출하고 지방회는 이를 심의 결의한 후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이를 공고한다.

## 제26조(사무총회)

사무총회는 교회의 연간 경과보고를 받으며 신년도의 제반 인사, 제정, 사업계획안을 의결하는 교회의 최고 결의 기관이다.

### 1. 조직

- 가. 사무총회는 제11조의 회원으로 구성 한다.
- 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 한다.

### 2. 소집

- 가. 사무총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하며 정기 사무 총회는 매년 말경에 소집하고, 임시 사무총회는 당회 결의와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정기 및 임시 사무총회시 제26조(사무총회)제2항 나호 및 다호에 의거 일시, 장소와 의제를 공고하였으나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재석(在席) 회원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나. 정기 사무총회는 당회 결의로 일시, 장소와 의제를 13일전 예배 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 다. 임시 사무총회는 당회 결의로 일시, 장소와 의제를 6일전 예배 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 한다.

### 3. 회무

- 가. 사무총회는 당회 또는 직원회로부터 연간 인사보고 와 사업 및 재산목록, 회계 결산 보고를 받는다.
- 나. 사무총회는 본 교회 각 기관의 경과보고를 받는다.
- 다. 사무총회는 교역자와 장로의 인사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며 당회 또는 치리목사가 선출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일반직원을 임명 공포한다.
- 라. 사무총회는 당회나 치리목사가 제출한 신년도 사업계획안을 인준하고 예산안을 협찬 한다.
- 마. 사무총회는 교회재산의 조정과정, 관리사항 등의 보고를 받고, 그 처리를 승인한다.
- 바. 교회재산 조정과정과 재정현황 및 인사관리 상황에 관한 정기 사무총회 회의록 및 임시 사무총회 회의록은 사무총회 종결 후 즉시 작성하여 매년 지방회 개최일 이전까지 지방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지방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무총회 회의록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아. 지방회의 확인(매장간인)을 받은 정기 또는 임시사무총회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27조(직원회)** 직원의 조직과 회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직**

가. 직원회는 교역자와 교직자로 조직한다.

나. 직원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단,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위임한 당회원이 대행한다.

### **2. 소집**

가. 직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 한다.

나. 정기 직원회는 분기별로, 임시 직원회는 필요시에 의장이 소집하며 성수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석회원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

다. 직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당회로 대체할 수 있다.

### **3. 회무**

가. 사무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집행을 보고받고 각 기관의 경과보고를 받으며, 당회 또는 예산위원회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협찬한다.

#### **나. 재정관리**

1) 본 교회의 모든 재정 출납은 수입 및 지출 결의서 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2) 재정 출납을 위하여 회계, 재무로 사무를 분장하고 재무는 수입금을 계산하고 장부에 기입하고 회계가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장부는 재무가 맡고 통장은 회계가 보관하며, 통장명이는 교회 명의로 하고 인장은 담임목사가 보관하고, 출납은 재무부장을 경유하여 담임목사가 결재한다.

3) 사무총회에서 통과된 예산 외의 금전 출납은 당회 결의로 집행한다.

4) 회계는 정기직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직원회는 당회의 주관 하에 관리 운영한다.

6) 모든 재정은 감사를 마친 후 보고해야 한다.

단, 회계, 감사의 임무는『**바울교회 관리운영규칙**』으로 정 한다.

**제28조(당회)** 당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 가. 당회는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 나.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당회원 중 1인이 된다.
- 다. 서기는 매년 회계 연도 말 당회장이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소집**

- 가. 정기당회는 2개월(짝수월)에 1회 당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당회는 필요시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당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당회장이 소집 하여야 한다.
- 나.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
- 다. 당회의 일반적인 의결은 재석회원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
- 라. 당회장이 유고시는 선임 장로가 회의를 소집하고 당회장의 위임사항을 처리 한다.
- 마. 서기는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기록 보관 한다.
- 바. 서기는 당회 시 전차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3. 회무**

**가. 인사사항**

- 1) 교역자 청빙
- 2) 소속목사 허락
- 3) 부목사 및 남, 여전도사 갱신 결의
- 4) 원로목사, 명예목사, 원로장로, 명예장로 추대결의
- 5) 명예전도사 추대
- 6) 장로후보자, 권사, 안수집사 선택
- 7) 신학생 천거
- 8) 직원, 일반직원, 각부부장, 교사, 구역장, 찬양대원 임명
- 9) 지방회 파송 장로대의원 선출
- 10) 교인의 이명증서 및 발부

**나. 치리사항**

- 1) 교인의 신앙상태 돌아봄
- 2) 소속기관 지도감독,(소속기관 조직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3) 교인의 포상, 징계, 해벌에 관한 일
- 4) 직원회와 사무총회 소집
- 5) 특별집회 결정과 강사 선임
- 6) 각 기관행사 강사선정 인준

## 다. 사무행정

- 1) 교회 회계감사, 각 기관 회계감사
- 2) 상회에 청원하는 일체의 사무
- 3) 각종 문서와 장부를 작성 및 보존
- 4) 특별헌금 결재, 예산안 작성, 추경 예산안을 작성
- 5) 교회재산 관리
- 6) 사무총회 회의록을 지방회에 제출
- 7) 연말 교세통계표 제출(교회 비치문서는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라. 예식

- 1) 목사 위임식, 목사 취임식, 장로 장립식, 장로취임식, 권사 취임식, 안수집사 안수식, 원로목사 추대식, 원로장로 추대식, 명예목사 추대식, 명예장로 추대식을 거행하는 일을 결의한다.

**제29조(임시당회)** 임시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직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4. 등록교인의 10분의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제30조(분과위원회 설치)** 당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당회 운영을 위하여 당 회원으로 구성된 인사 및 기획분과, 재정 및 재산분과, 선교 및 전도분과, 교육분과, 문화 및 예술분과, 봉사 및 구제분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각 분과 위원은 담임목사가 시무장로의 적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한다.
2. 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제로 선출 한다.
3. 분과위원회 유기적인 행정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울교회 관리운영규칙**” 을 두고 각 호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단, 바울교회 관리운영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헌법과 정관에 준용한다.

## 가. 인사 및 기획분과 위원회

### 1) 관리운영 규정 제정 및 변경

- 가) 직원근무 규정
- 나) 보수관리 규정

- 다) 여비관리 규정
- 라) 문서관리 운영규정
- 마) 차량관리 및 운영규정
- 바) 청빙위원회 운영규정
- 아) 원로 명예장로 예우에 관한 규정
- 사) 바울센터 관리 운영규정
- 자) 공원묘지(부활동산) 운영규정 등
- 2) 부교역자 청빙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3) 교회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 4) 교회행사계획(전국 행사) 수립 및 추진
- 5) 교회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6) 각종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사항
- 7) 예산안 집행의 적법성 감독

#### **나. 재정 및 재산분과 위원회**

- 1) **바울교회 재정운영 규정 제정 및 변경**
  - 가) **재산 및 재정분과 운영규정**
- 2) 예산 편성 및 결산
- 3) 교회 재정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4) 교회 연구비 지급 인원 및 금액 결정

#### **다. 선교 및 전도분과 위원회**

- 1) **선교 및 전도분과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
  - 가) **선교 및 전도분과 운영규정**
- 2) 국내 교회 개척 및 설립과 후원
- 3) 선교사 파송 및 후원
- 4) 선교사 관리 및 활동 보고서 작성
- 5) 전도 및 선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 6) 선교비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 및 당회 공지

#### **라. 교육 분과 위원회**

- 1) **교육분과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
  - 가) **교육분과 운영규정**
- 2) 교육부서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 3) 교육부서 간 협조체제 구축

- 4) 교사확보 및 교사 교육방안
- 5) 교회학교 행사 지원 및 활동

#### 마. 문화 및 예술분과 위원회

##### 1) 문화 및 예술분과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

###### 가) 문화 및 예술분과 운영규정

- 2) 장년 성가대 및 관현악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 임·면에 관한 사항
- 3) 합창제(성가발표회)에 관한사항
- 4) 성가대 간 상호 협조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5) 문화 및 예술 관련 선교회 설립 및 지원

#### 바. 봉사 및 구제분과 위원회

##### 1) 봉사 및 구제분과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

###### 가) 봉사 및 구제분과 운영규정

- 2) 봉사 및 구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3) 장학기관 설립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4)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 5) 장학기금 모금 및 구제활동 계획수립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교회와 당회에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중요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바울교회 관리운영규칙 아래 특별위원회 규정』을 두고, 각 호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단, 『특별위원회 규정』 정하지 않은 사항은 헌법과 정관에 준용한다.

1. 교회 건축건립에 관한 사항
2. 교회정관 개정 및 관리운영규정 관한 사항
3. 담임목사가 요청에 관한 사항
4. 위원장 또는 당 회원의 재적 3분의 1이상이 요청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교회와 당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 제4장 재산 및 재정의 관리

### 제32조(재산)

1. 본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중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한하여 재단 법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 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교회목적 기본 재산을 구성 한다.

2. 교회의 토지나 건물 중 직접 종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본단, 교육관, 목사사택 및 법률에 의한 취득세 면제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 보존할 수 있다.
3. **제32조(재산)제2항** 의거 유지재단 명의 이외 부동산은 본 교회의 명의로 소유 관리한다.
4. 현금 등 교회공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이나 증여, 기부 받은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부당하게 운영·관리하였을 시는 징계법상 징계 사유가 된다.
5. 차량 등 소유권이 있는 자산은 **제32조제3항에** 준용하여 처리 한다.
6. 예외가 필요할 시에는 당회의 결정에 의 한다.

### **제33조(재산관리)**

1. 기본재산 중 본당과 중요재산을 처분 시(매매(賣買), 담보제공, 교환 등)에는 당 회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무기명투표제로 찬성을 얻어 절차를 시행한다.  
단, 시행절차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한다.
2. 목회자의 가족 및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본 교회 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34조(재정)**

1.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의 현금 및 헌물과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등으로 한다.
2. 교인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본 교회에 헌납했을 때는 헌납과 함께 본 교회의 재산이 되며, 헌납자는 그 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다.
3. 재정수입은 현금에 의존하며 현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일헌금. 나. 십일조헌금. 다. 건축헌금. 라. 감사헌금. 마. 절기헌금.  
바. 특별헌금. 사. 선교헌금. 아. 기타헌금 등
4. 교회의 재정은 **반드시 시중 또는 지방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바울교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5. 본 교회의 재정은 반드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인출(중도해지 포함)시에 원금손실이나 인출에 제약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예치해서는 안 된다.
6. 재정 결산은 매년 11월 30일을 마감일로 정하여 감사를 받은 후 당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회의 결의로 결산 한다.
7. 감사는 **매년 1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 하며, 필요시 당회의 승인을 받아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35조(재정운용 원칙)**

1. 청지기적 사명 :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도록 청지기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여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2. 총액표시 원칙 :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교회 회계 결산 시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투명성의 원칙 : 재정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보고하되 개별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개별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4. 건전운용 원칙 : 재정은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차입할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 계획을 세워 당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록물 유지 :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36조(회계원칙)**

1. 회계연도 :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2월1일부터 익년 11월30일 까지로 한다.
2. 회계방식 : 본 교회의 기장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단식부기로도 병행할 수 있다.
3. 구분기장 : 본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와 그 밖의 종교 활동비 대해서는 구분하여 기장한다.
4. 보존연한 :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서류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익일부터 현금관련 자료는 10년간 보존하고, 재정 및 회계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별도로 보존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7조(교회 재정 운영 규정)**

본 교회의 재정운영과 바울교회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당회의 결의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따른다.

## 제5장 포상, 징계, 해벌 사면

### 제38조(포상)

1. 포상의 의의 : 하나님의 교회도 사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차에 선행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회봉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본(模本)을 삼도록 한다.
2. 포상의 대상 : 전도 사업이나 교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교역자나 기타 교인은 포상 한다.  
단, 포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39조(징계)

모든 징계는 징계법 및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본 교회의 별도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40조(해벌 및 사면)

징계 받은 자의 해벌 및 사면은 교단 헌법 제89조, 제90조 절차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교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소속 지방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 제2조(정관 변경)

본 교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에서 당 회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무기명투표제로 찬성을 얻어 사무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決議)로 한다.

## 제3조(운영규칙 제정, 개정)

본 교회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정관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회의 각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및 각 부서의 제반규정 등을 제정(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과 대한민국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 제5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관련 행정처리 및 재정·재산권 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시행일)

본 교회의 정관은 당회 결의와 사무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① 1982년 08월29일 제정
- ② 1986년 08월29일 개정
- ③ 2017년 12월19일 개정
- ④ 2018년 12월01일 개정
- ⑤ 2019년 08월10일 전문개정
- ⑥ 2019년 12월17일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p>제20조(장로) 장로의 자격과 권한과 직무 및 선택절차는 아래와 같다.</p> <p>1. 자격 가. 연령이 45세 이상 65세 미만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그 가정이 교회생활에 성실하며 덕망이 있는자. 나. ~자, 항까지&lt;이하생략&gt;</p> <p>2. 생략~</p> <p>3. 선택절차 가. 세례교인 200인에 대하여 장로 1인을 선택하되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의 무기명투표제 찬성으로 추천한 자를 사무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단헌법 제41조(장로)제1항 “가:호(자격) 및 제3항”가“(선택)에 따라 변경된 내용입니다.</p> <p>제20조(장로) 장로의 자격과 권한과 직무 및 선택절차는 아래와 같다.</p> <p>1. 자격 가. 연령이 35세 이상 되는 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그 가정이 교회생활에 성실하며 덕망이 있는자. 나. ~자, 항까지&lt;이하생략&gt;</p> <p>2. 생략~</p> <p>3. 선택절차 가. 세례교인 25인에 대하여 장로 1인을 선택하되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의 무기명투표제 찬성으로 추천한 자를 사무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